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50

제출년월일 : 2005. 11.

제 출 자 : 종로구청장

1. 개정이유

기금의 예치를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서 구 금고로 변경하여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기금운용관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무회계 규칙」의 규정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운용방법을 변경하여 안정성을 제고함 (안 제2조제3항)

기금예탁 기관을 금융기관에서 구 금고로 변경

나. 기금운용관 변경 (안 제5조제2항)

건설교통국장 → 토목과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및 운영관리 조례

나. 예산조치 : 비 예산사업

다. 기 타

1) 입법예고 : 생략(서울특별시 종로구 법제사무처리규칙 제13조제3호)

2)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종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하고,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은행법·단기금융업법·신탁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기금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를 “서울특별시 종로구금고에”로 한다.

제3조제1호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하고, “종로구”를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중 “행하기”를 “집행하기”로 하고, “소속 공무원”을 “소속 직원”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건설교통국장”을 “토목과장”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준용) 기금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및운영관리조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1조(목적) -----				
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 ----- 「지방자치법」-				
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 ----- 서울특별시 종로구				
133조의 규정에 의거 종로구도로굴착 ----- 도로굴착복구기금				
복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 -----				
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관리 운용) ①기금은 건설 제2조(기금의 관리 운용) <삭 제>				
교통국장이 관리·운영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기금은 은행법·단기금융법·신탁업 ③-----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고에 -----				
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채 -----				
신관서에 기금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				
범위안에서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 -----				
탁한다. 다만, 기금의 운영상 불가피한 -----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탁기간 만료 -----				
전이라도 해지하여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제3조(기금의 재원) -----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도로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 1. 「도로법」 ----- 서울				
로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 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자 부담금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현행개정안

제5조(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 1. 구청장	제5조(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 1. -----
은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무를	-----
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	집행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
금운용관 및 출납원을 임명한다.	-----
2. 제1항의 기금운용관은 건설교통국장	2. ----- 토목과장
으로 하고, 기금출납공무원은 도로관리	-----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
제7조(준용) 이 조례의 규정한 것 외에	제7조(준용) 기금의 운용에 있어 이 조
기금의 결산 및 재무사무에 관하여는	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서울
종로구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특별시 종로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
	용한다.